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제3조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별)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식육 및 식육가공품

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은 1.나목을 따른다)

†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4분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뉴질랜드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사슴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자비우육	
덴마크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독일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리투아니아	가금육	
멕시코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쇠고기	
	자비우육	
미국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쇠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벨기에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브라질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산파까타리나 주에 한함
스웨덴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스위스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스페인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아르헨티나	자비우육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우루과이	자비우육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쇠고기	
아일랜드	쇠고기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영국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오스트리아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이탈리아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중심부온도 69℃, 30분 이상 또는 비가열제품 은 400일 이상 숙성처리
일본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중국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중심부온도 70℃, 30분 이상, 75℃, 5분 이상, 80℃, 1분 이상
칠레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쇠고기	
캐나다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태국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포르투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폴란드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프랑스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핀란드	가금육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필리핀	닭고기	
헝가리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호주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사슴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공통	자비우육	
	식육케이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 조건 준수
토끼육		

* 가금육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 그 식육가공품은 해당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식육가공품(멸균처리 식육가공품에 한함)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 햄류	
뉴질랜드	건조저장육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양념육, 식육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원료우지에 한함)	
덴마크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독일	소시지류, 햄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	
몽골	건조저장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미국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식육케이싱,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에 한함), 동물성유지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양념육에 한함)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스웨덴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스페인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싱가포르	햄류	
아르헨티나	건조저장육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분쇄	식육추출가공육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가공육제품, 양념육에 한함)	양념육 변경
영국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양념육류(양념육에 한함)	식육추출가공육 양념육 변경
이탈리아	베이컨류, 소시지류, 햄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인도	식육추출가공품	
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중국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칠레	소시지류, 햄류	
캐나다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포르투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식용돈지에 한함)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것에 한함
폴란드	베이컨류, 소시지류, 햄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함)	
프랑스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	소시지류,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헝가리	베이컨류, 소시지류	
호주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원료우지에 한함)	

* 쇠고기, 산양·면양고기, 사슴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육가공품은 해당원료를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멸균처리 이상의 식육가공품은 나.의 목록을 따른다.

2. 원유 및 유가공품

가. 원유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미국·캐나다·호주· 뉴질랜드·덴마크·스 웨덴·핀란드	원유	

나. 유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그리스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	농축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노르웨이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	
뉴질랜드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대만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아이스크림류	
덴마크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독일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라트비아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아이스크림류	
러시아	버터류, 분유류, 유당, 아이스크림류	
룩셈부르크	유크림류	
리투아니아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	
말레이시아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멕시코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치즈류	
미국	가공유류(가공유, 강화우유에 한함),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방글라데시	버터류	
벨기에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불가리아	치즈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브라질	아이스크림류, 치즈류	
사우디 아라비아	치즈류	
사이프러스	유크림류, 치즈류	
스웨덴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	
스위스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스페인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슬로바키아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싱가포르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치즈류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아랍에미리트	버터류	
아루바	분유류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	버터류, 분유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아일랜드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에스토니아	버터류,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	
에콰도르	치즈류	
영국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오스트리아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유당, 우유류,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우루과이	버터류, 분유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우크라이나	농축유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이스라엘	유당	
이탈리아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당,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인도	버터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	
일본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농축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중국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체코공화국	가공유류,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유청류 유크림류, 치즈류	
칠레	농축유류,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	
카자흐스탄	치즈류	
캐나다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크로아티아	치즈류	
태국	아이스크림류	
튀르키예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치즈류	
파키스탄	버터류, 분유류	
포르투갈	우유류(우유에 한함)	
폴란드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청류, 치즈류	
프랑스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핀란드	분유류, 유청류, 치즈류	
필리핀	가공유류(가공유에 한함),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치즈류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헝가리	치즈류	
호주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우유에 한함),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3. 식용란 및 알가공품

가. 식용란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 · 덴마크 · 폴란드 · 스페인 · 스웨덴 · 호주 · 네덜란드 · 일본 · 헝가리 · 캐나다 · 영국 · 독일 · 미국 · 태국 · 프랑스 · 핀란드	식용란	

나. 알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전란액	
대만	피단, 알가열제품	
덴마크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전란액	
독일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액, 전란분	
라트비아	난황액	
말레이시아	난백액, 난황액, 전란액	
멕시코	난황액	
미국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분, 전란액, 피단	
벨기에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스웨덴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스위스	난황액	
스페인	난백분	
우크라이나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이탈리아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전란액	
인도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전란액	
일본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중국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분, 전란액, 피단	
캐나다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제품, 전란분, 전란액	
태국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페루	난백분	
프랑스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핀란드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4. 기타 식육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	타조고기	

5. 기타 알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호주	타조의 알	

6. 식육함유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원재료의 종류	비고
네덜란드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뉴질랜드	소·산양·면양·사슴고기, 돼지고기 및 타조고기 원료	
덴마크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독일	돼지고기 원료	
리투아니아	가금육 원료	
멕시코	쇠고기 원료	평균처리
	돼지고기 원료	
미국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벨기에	돼지고기 원료	
브라질	가금육 원료	산따까타리나 주에 한함
	돼지고기 원료	
스웨덴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스위스	돼지고기 원료	
스페인	돼지고기 원료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원료	
아르헨티나	자비우육 원료	
우루과이	쇠고기 원료	평균처리
아일랜드	돼지고기 원료	
영국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오스트리아	돼지고기 원료	
이탈리아	돼지고기 원료	
일본	가금육 원료	평균처리
	돼지고기 원료	
중국	가금육 원료	
칠레	쇠고기 원료	평균처리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캐나다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태국	가금육 원료	
포르투갈	돼지고기 원료	

국가 또는 지역	원재료의 종류	비고
폴란드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프랑스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핀란드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필리핀	닭고기 원료	
헝가리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호주	소·산양·면양·사슴고기, 가금육 및 돼지고기 원료	

* [별표] 1.가.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역, 종류별 열처리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7. 알함유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원재료의 종류	비고
네덜란드	식용란 원료	
뉴질랜드	식용란 및 타조알 원료	
덴마크	식용란 원료	
독일	식용란 원료	
미국	식용란 원료	
스웨덴	식용란 원료	
스페인	식용란 원료	
영국	식용란 원료	
캐나다	식용란 원료	
태국	식용란 원료	
폴란드	식용란 원료	
프랑스	식용란 원료	
핀란드	식용란 원료	
헝가리	식용란 원료	
호주	식용란 및 타조알 원료	
일본	식용란 원료	